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따른 해당 일자별 운영 사항 미준수

관계기관 한류초등학교

내 용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 출석 독려 및 독촉 절차를 해당 일자별로 준수하라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한류초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2020. 12.04~ 2021.01.11. 총 25일의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인 ○○○(1학년), ○○○(6학년)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독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한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처리 지침 미준수

관계기관 한류초등학교

내 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류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1학년 △반 ○○○, ○○○, ○○○, ○○○, ○○○ 학생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신청서 부재 및 결과보고서 양식이 아닌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로 갈음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한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한류초등학교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과 제3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되 추정가격 기준 등에 따른 예외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1인수의) 체결이 가능하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행정 안전부장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고시한 경우에는 상향된 추정가격 기준에 의해 2인 이상 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초등학교에서는 2020. 9. 17. “다함께 꿈터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건이 상기 법령 및 고시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주)△△△△△” 와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한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한류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시 긴급한 안전을 제외하고는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류초등학교에서는 <표>와 같이 매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집공고와 회의안건 송부 및 회의결과 공개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무 부적정 현황

학년도	회차	긴급 여부	개최일	안전발송		결과게시		비고
				발송일	지연 일수	게시일	지연일수	
2020	5	긴급	2020.8.27.	2020.8.27.	7	미게시		
2020	7		2020.11.2.	2020.10.28.	2	2020.11.5.	-	
2020	10		2021.1.27.	2021.1.19.	-	2021.1.29.	-	
2020	11		2021.2.23.	2021.2.22.	6	2021.3.2.	-	
2021	2		2021.4.13.	2021.4.7.	1	2021.4.14.	-	
2021	8		2021.12.6.	2021.11.29.	-	2021.12.14.	1	
2021	10		2022.2.23.	2022.2.16.	-	2022.2.25.	-	
2022	1		2022.4.7.	2022.3.31.	-	2022.4.15.	1	

## 【조치할 사항】

- ① 한류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